2026 주택관리사 기본서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정오사항_4 (초판기준)

페이지	267p
수정 전	⑻ 연금보험료 부담 및 납부 등 ① 연금보험료 납부 ㉡ 사업장가입자의 ~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**1천분의 45**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수정 후 [법령개정]	⑻ 연금보험료 부담 및 납부 등 ① 연금보험료 납부 ㉡ 사업장가입자의 ~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**1천분의 65**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➽ **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 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** **1. 2026년은 1만분의 475** **2. 2027년은 1만분의 500** **3. 2028년은 1만분의 525** **4. 2029년은 1만분의 550** **5. 2030년은 1만분의 575** **6. 2031년은 1만분의 600** **7. 2032년은 1만분의 625**
페이지	490p
수정 전	②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수정 후 [법령개정]	②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**이 경우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된 욕실·화장실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.**
페이지	637p
수정 전	[문제 60번] ①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수정 후 [법령개정]	[문제 60번] ①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~ 하여야 한다. **이 경우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된 욕실·화장실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.**
페이지	672p
수정 전	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⑴ 목 적 이 법은 **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**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·촉진과 **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**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,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,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~.
수정 후 [법령개정]	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⑴ 목 적 이 법은 **재생에너지의**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·촉진과 **재생에너지 산업**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,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,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~.
페이지	672p
수정 전	⑵ 용어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**①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** **㉠ 수소에너지**

	㉡ 연료전지 ㉢ 석탄을 액화·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(重質殘渣油)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㉣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
수정 후 [법령개정]	(2) 용어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~~①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·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~~ ~~㉠ 수소에너지~~ ~~㉡ 연료전지~~ ~~㉢ 석탄을 액화·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(重質殘渣油)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~~ ~~㉣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(삭제)~~
페이지	673p
수정 전	② 재생에너지란 햇빛 · 물 · 지열(地熱) · 강수(降水) ·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~. ③ **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이하 "신·재생에너지 설비"라 한다)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(이하 "신·재생에너지"라 한다)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·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** ④ **신·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.** ⑤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**신·재생에너지 발전**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수정 후 [법령개정]	① 재생에너지란 햇빛 · 물 · 지열(地熱) · 강수(降水) ·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~. ② **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** ③ **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.** ④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**재생에너지 발전**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페이지	717p
수정 전	[문제 36번] **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** 개발 · 이용 · 보급 촉진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~
수정 후 [법령개정]	[문제 36번] **재생에너지** 개발 · 이용 · 보급 촉진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~